

개인신용손해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제한 : 2012년 4월 1일 이전 자동갱신 첨부 계약의 갱신 계약에 한해 판매함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범위는 단순히 상해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질병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보험기간 (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최대 3년), 보험료 납입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1년	일시납, 2회납, 4회납, 12회납
2년, 3년	일시납

- 3)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사유

구분	담보	내용
기본	24시간 상해사망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50%이상 후유장해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1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특약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 정한 80%이상의 후유장해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전액 보상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1)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2) 5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5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3)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 또는 80%이상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1)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산출 예시

가입 예) 보험기간 1년, 상해급수 1급, 40세 남자, 월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24시간 상해사망 및 50%이상 후유장해	5,000만원
선택계약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5,000만원
보험료		3,280월

* 직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5. 기타 알아두실 사항

Q) 자살, 자해 등의 보상여부?

A) 피보험자가 자살, 자해 등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ubb. Insured.SM